

□ 교통안전시설(신호기분야) 자격 기준

- 시행일 :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
- 관련법 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25조
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,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조

구분		자 격 기 준
공사 분야	면허	전기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
	실적	실적제한 없음
설계 분야	면허	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“전력시설물의 설계업”을 등록한 자로서, 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” (교통기술사보유)로 신고한 자
	실적	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수행(준공) 실적 최근10년간 5천만원이상(누적합계액) 보유한 업체 (단, 공사비 추정가격 3억원미만 실적제한 없음)
감리 분야	면허	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“전력시설물의 감리업”을 등록한 자로서, 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“교통전문분야”로 신고한 자
	실적	실적제한 없음

□ 교통안전시설(안전표지분야) 자격 기준

┆ 관련근거 : 도로기획관 방침(2008.2.19)

-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설계·감리·시공업체 선정관련 입찰참가 자격기준

시설별	구분	대 상	자 격 기 준
안전표지	시공	면허	○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 전문면허 소지업체 ○ 주사무소가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
		실적	○ 실적제한 없음
	설계·감리	면허	○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
		실적	○설계 :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설계용역 누적실적 1,000만원 이상을 준공한 업체 ○감리 :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감리용역 누적실적 1,000만원 이상을 준공한 업체